



I. 머리말

이번호에서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부모로부터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할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6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조세특례제한법 § 30의5)한다.



용어의 설명

-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 168①, 법인세법 § 111① 또는 부가가치세법 § 5①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 증여자 및 수증자

1)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2)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말한다.(2006. 1. 1. ~2007.12.31. 에는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거주자임).

나.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 94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기타자산(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다. 증여시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라. 창업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 5①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업종기준 적용시 영농상속공제(상속세 및증여세법 § 18②2호) 대상인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을 제외하고, 음식업은 추가한다.

② 음식업 중 개별소비세법 § 1④에 의한 유흥주점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과세특례 내용

가.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30의6)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기타 과세특례

1)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특례

- ①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즉,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②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배제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창업자금 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즉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 ③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 적용배제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세 계산특례

- 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창업자금은 당해 자금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 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②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③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한다. 단,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3)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다.

3. 사후관리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다음 (1)~(6)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1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 중소기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등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5)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6)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1)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4팀-450, 2008.2.20).
- 2)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4팀-1393, 2007.4.30).
- 3) 수증자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국세청 재산세과-4457, 2008.12.30)받을 수 있다.
- 4)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규정이 적용(국세청 재산세과-4457, 2008.12.30)되는 것이다.
-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과 개인사업을 각각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재산-167, 2009.09.09)되는 것이다.

Ⅲ.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2008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등(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 증여자 및 수증자

1)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한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관련 해석사례]

- ①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재산-779, 2009.11.19.)
-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재산-2390, 2008.08.22.)
- ③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재산-874, 2009.11.27.)
- ④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산-625, 2009.03.25.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4팀-998, 2008.04.22.).

2)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사례]

- ①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재산-1654, 2009.08.10.)
 -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산세과-2081, 2008.08.01.)
 - ③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인적분할한 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주식을 증여한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됨(재산세과-4458, 2008.12.30.)
 - ④ 동일기업을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하던 2인이 각각의 자녀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7, 2009.03.20.)
 - ⑤ 부친(40%)과 삼촌2인(30%씩)이 영위해온 중소기업 주식을 해당주주 3인의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들이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재산-221, 2010.04.07.).
 - 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2389, 2008.08.22)
- *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자의 10년 이상 가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⑦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산-2392, 2008.08.22)
 - ⑧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

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재산-224, 2010.04.07.).

나. 증여물건

수증자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관련 해석사례]

- ①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556, 2009.07.27.)

다. 증여시기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라. 승계대상 “가업”의 요건 검토

- 1) 증여한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아래의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말한다.
 - ①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 ② 중소기업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 초과 시 3년간 중소기업 간주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단, 업종기준 적용시 영농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 18②2호) 대상인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을 제외하고, 음식업은 추가한다.

음식업중 개별소비세법 § 1④에 의한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이와 유사한 장소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④ 증여자가 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40%) 이상을 보유

* 특수관계자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19②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업종기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2①본문)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단,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①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i)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ii)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iii)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을 포함한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거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 규모기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2①1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참고〉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규모기준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독립성 기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2①3호)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관련(별표2)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②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어야 할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어야 할 것

(4) 기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i)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 ii)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 iii)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 iv)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관련 해석사례]

- 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재산-308, 2009.09.24).
-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재산-1469, 2009.07.17.).

마.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세특례 내용

가.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가업승계 주식 등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30조의 5)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상속세 · 증여세 계산특례

1)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특례

(1)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즉,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2)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배제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인 가업승계 주식 등 외의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적용 배제

과세특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상속세및증여세법 § 18②1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① 해당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15③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15④1호(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15①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③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2)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세 계산특례

- (1)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승계 주식 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2)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3)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즉,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한다. 단,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4) 상장(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도 과세특례 적용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3)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3. 사후관리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증여세에 추징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square \text{ 이자상당액} = (\text{증여당시 기본세율에 의해 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당초 증여 주식의 증여세신고기한 익일부터 추징 사유발생일까지 일수}) \times (3/10,000)$$

가.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상속세및증여세법 § 15③)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

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자를 말한다.

-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석사례】

-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외의자가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음(재산 - 821, 2009.04.29.).

나. 정당한 사유(추징 배제사유)

-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3)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